

[별표 1] <개정 2019. 4. 5.> <개정 2020. 11. 26.>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(제5조 제1항 관련)

구 분		구성인원	위원장	위 원	위원 지명권자 또는 위촉권자
개방형 직위 운영심의위원회		5인 이상	사무총장	◦ 국장 또는 과장 중 3인 이상 ◦ 민간위원 1인 이상	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
과장선발 심사위원회		5인 이상 7인 이하	사무총장	◦ 국장 2인 이상 ◦ 과장 또는 직원 중 2인 이상	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
채용심사 위원회		3인 이상	위원 중 지명	◦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 ◦ 외부위원 1/2 이상	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(위원장 지명 포함) 단,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심사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사무총장
전입 심사 위원회	5급 이상	3인 이상	사무총장	◦ 국장 또는 과장 중 2인 이상	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
	6급 이하	3인 이상	고위공무원단 중 1인	◦ 과장 또는 직원 중 2인 이상	사무총장 (위원장 지명 포함)
보통 승진 심사 위원회	고위 공무원 및 3급	3인 이상	상임위원 중 1인	◦ 사무총장 ◦ 고위공무원 1인 이상	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(위원장 지명 포함)
	4급 및 5급	3인 이상	사무총장	◦ 국장 또는 과장 중 2인 이상	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(위원장 지명 포함)
	6급 이하	3인 이상	사무총장	◦ 과장 또는 직원 중 2인 이상	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(위원장 지명 포함)
근무성적 평가위원회		5인 이상	사무총장	◦ 국장 3인 ◦ 과장 1인 이상	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
성과급 심사위원회		5인 이상	사무총장	◦ 국장 또는 과장 중 4인 이상	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
공적심사 위원회		6인 이상 11인 이하	사무총장	◦ 국장 또는 과장 ◦ 민간위원 1/2 이상	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
임기제공무원근무기간연장심사위원회		3인 이상	사무총장	◦ 국장 또는 심사대상자의 소속 과장 중 1인 이상 ◦ 심사대상자의 직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 1인	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(임기제 6급 이하 및 다급 이하를 심사하는 경우의 국장 또는 과장인 위원은 사무총장)
채용점검위원회		2인 이상	외부위원 중 호선	◦ 국장 또는 과장 중 1인 이상 ◦ 외부위원 1인 이상	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

- ※ 1. 삭제<2011.8.11>
 2. 공적심사위원장 및 위원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포상 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포상의 경우에는 외부위원 위촉가능<개정 2020.11.26.>
 3. 삭제<2014.7.1>
 4. 여러 직급(계급)의 공무원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에는 상위직급을 기준으로 위원회를 구성함
 5.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채용절차의 객관성,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고, 채용심사위원회와 채용점검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모두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.